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48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22.

발 의 자 : 강선영, 김성한, 고찬양,  
홍재희, 김현진, 박성호

## 1. 제안이유

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.

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)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(안 제5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2항

나. 협조부서 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4. 23. ~ 4. 29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지원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(주최)하는 행사, 회의,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,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
2.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
3. 그 밖에 구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조의2(지원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(주최)하는 행사, 회의,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,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</u></li> <li><u>2.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</u></li> <li><u>3. 그 밖에 구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</u></li> </ol>

**□ 「관광진흥법」**

제76조제2항(재정지원)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